

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 규칙 제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 Declaration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Authorization Code: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To:/...../...../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Telephone: Fax: E-Mail: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RVC	10. Country of Origin
11. Observations/Finding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Telephone: Fax: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허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상, 이 서류는 수출자가 수기 또는 타자 형식으로 읽기 쉽게 빠짐없이 작성하고, 수입자는 신고 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재가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제2란: 신고서가 최대 12개월(포괄증명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에 적용되는 경우, 이 란을 작성합니다. “부터”는 신고서가 포괄신고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입니다.(이 날은 이 신고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 제1란에 정의된 대로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 “VARIOUS”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제공된 정보가 비밀인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합니다.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제5란: 상품의 품명을 제공합니다. 그 품명은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일치하는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합니다. 신고서가 상품의 단일선적에 적용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합니다. 송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적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기재합니다.

제6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합니다.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아래에 규정된 가부터 다까지의 적용 가능한 기준을 기재합니다.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상품은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4.2조(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 제4.2조가호에 언급된 대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나. 제4.2조나호에 언급된 대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다. 제4.2조다호에 언급된 대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제8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를 기재합니다.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기재하고 이 신고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합니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신고서 외)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

제9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기준(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4.4조에 규정된 대로 RVC가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합니다.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즉,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KR”을,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PH”를 기재합니다.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는 경우와 같이, 이 신고서에 관하여 특이사항/비고가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당국 및 발급일이 기재됩니다.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재될 날짜는 신고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입니다.